

-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의거 귀하의 입주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필히 서류제출 시간을 당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첨자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으로 입주대상자(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요청하여, 또한 계약체결 전 입주대상자로부터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받아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합니다.
만약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따라 당첨(분리세대, 전산검색 소요시간 등으로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취소 됨)을 취소하며,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방법안내 (예비입주자 포함)

- 제출방법 : 견본주택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참조(<http://wd-seohan1.com>)
- 견본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6-18
- 당첨 유형별 자격 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참조
-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당첨자 사전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필히 서류제출 방문 시간을 당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방문안내

- 방문기간 : 2020.08.25(화) ~ 2020.09.03(목) 16:00까지(10일간)
- 예약방법 : 당사 홈페이지 접속 → 당첨자 확인 → 예약 → 방문 → 서류제출
- 홈페이지 주소 : <http://wd-seohan1.com>
- ※ 견본주택 방문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방문은 당첨자 동반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의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방문 및 서류검사 안내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TEL : 053-327-0500 / FAX : 053-756-8137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서약서	-	· 각 청약별 자격확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요망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자 구비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대리 계약 추가 서류	○	계약자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위임장	-			
부적격 통보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판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건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